

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대한번안동의(안)

의안	94-40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4. 10. 27.

제 출 자 : 김영수의원외1인

1. 번안이유

- 94. 10. 24 제30회 달서구의회(임시회)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본 조례중개정조례(안) 제9조 제4항의 후단 "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"로 강제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"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"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.

2. 주요골자

- 개정안 제9조 제4항의 후단 "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"를 "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"로 번안 동의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대한번안동의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번안동의한다.

제9조 제4항중 "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"를 "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"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번 안 동 의 (안)
<p>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</p> <p>①~③(생략)</p> <p>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)</p> <p>①~③(생략)</p> <p>④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할 수 있다.</p>